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

고체 건축자재(solid building materials)

고체형태의 건축자재로 건조와 같은 상전이(phase transition) 없이 직접 사용설명서에 따르는 특성을 갖는 자재

액체 건축자재(liquid building materials)

액체상태의 건축자재로 건조와 같은 상전이(phase transition) 후에 사용설명서에 따르는 특성을 갖는 자재

단위 방출량(SER_a , specific emission rate)과 단위길이당 방출량(SER_l , length specific emission rate) 시험시작 시점으로부터 규정된 시간 이후에 시험대상 건축자재의 시험편으로부터 단위시간당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의 질량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total volatile organic compounds)

실내공기 중에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프에 의하여 n-헥산에서 n-헥사데칸까지의 범위에서 검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대상으로 하며, 톨루엔으로 환산하여 정량

KEWI

제품시료의 채취 방법

시험 대상이 되는 건축자재는 일반적인 제조과정에 의해 생산되고 포장 및 취급되어야 하며, 채취된 시료는 1 시간 이내에 포장하여야 한다.

- 롤 형태의 제품

- (1) 롤의 1 m 안쪽 혹은 가장 바깥층을 제외한 안쪽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 (2) 시료는 제품의 중앙부분에서 채취한다.
- (3) 반복적인 무늬가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무늬 부분이 시험편의 중심에 오도록 채취한다.

- 판상 형태의 제품

개봉하지 않은 제품을 시료로 한다. 단, 제품이 취급하기에 커서 배송이 어렵다면, 제품의 중앙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 액체 제품

개봉하지 않은 제품을 시료로 한다. 시료는 시료 채취량으로 충분한 제품포장단위에서 채취한다.

실내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여부 확인의 예외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만 해당한다)을 받은 경우
3.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건축자재의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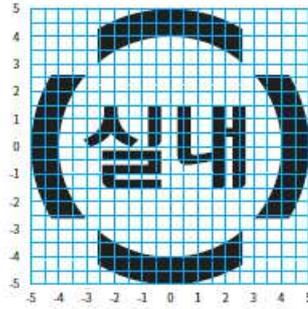
실내용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건축자재가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도안 모형



유효기간: 20 . . . 까지

2. 도안 요령



비고: 표지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표현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글씨체를 제외한 원형의 색상을 회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KEWI

